

2025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재공고

오존 및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10. 2.

의왕시장

1. 사업내용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2. 공고목적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의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세탁소를 선정하기 위함
3. 지원자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유기용제 세탁용량이 30kg미만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지원시설 설치로 전체 처리용량이 30kg을 초과해서는 안됨.)
 -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며, VOCs 저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 5년 이상의 VOCs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가능한 자
 - 자기부담금 20% 이상 지불 가능한 자
 - 유의사항
 - 신청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불법건축물 등 타 법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세탁소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각1개소를 선정하고, 세탁기 설치업체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로 계약 선정

5. 지원예산 : 80,000천원

- 지원금액: 최대 40,000천원/대 (도비 37.5%, 시비 62.5%)
 - ※ 50,000천원 기준 VOCs 저감시설 설치비의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 ※ 50,000천원 이상의 VOCs세탁기의 경우 자부담이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있음

6. 신청기간 : 2025. 10. 2. ~ 10. 22. (20일)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접수처 : 의왕시청 환경과(신관 2층)

※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8. 신청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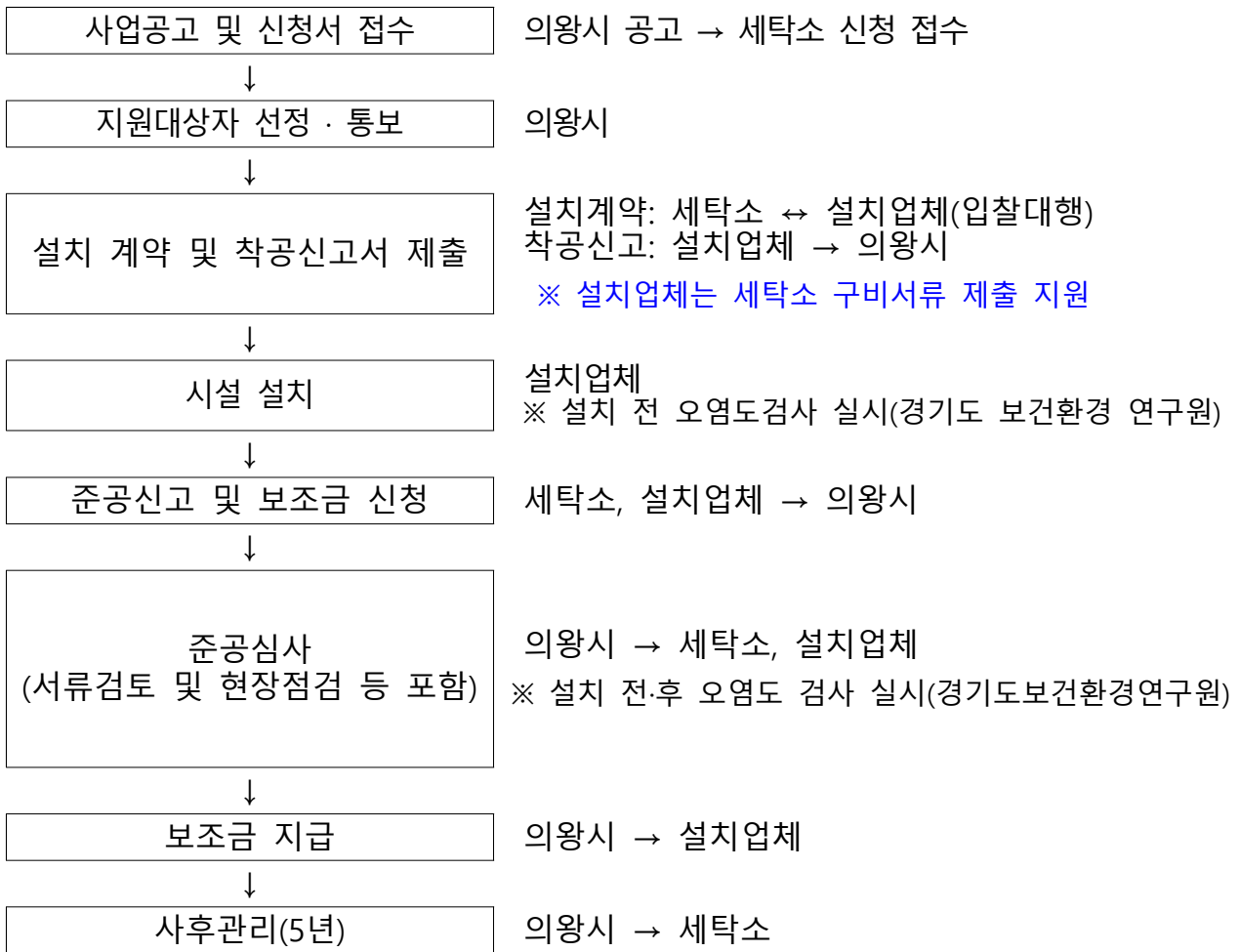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서식 1-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1-2]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시)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서식 1-3]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선정된 경우 제출서류는 하단과 같으며, 세탁기 설치업체가 서류 작성을 지원함.

- [서식 1-4] 사업장 위치도 1부.
- [서식 1-5]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 [서식 1-6] 이행확인서 1부.
- [서식 1-7]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0. 신청서 평가

- 평가 배점 : 총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100점)
- 보조금 수령자(세탁소)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1]에 따르며, [붙임 1]의 “보조금 수령자(세탁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 심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
 - ① 기존 세탁기(또는 건조기)의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 선정된 지원대상자(세탁소)에 구두 및 문서로 통보한다.

11. 보조금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참고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업체를 선정 후 결과 통보**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 순위 결정

① 기존 세탁기의 사용연수가 오래된 순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 선정 취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 후보 순위에 따라 선정

○ 세탁기 설치업체 선정(입찰)

- 지원대상 세탁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 규정의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로 계약체결
- 지원대상 세탁소는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의 대행을 요청, 의왕시는 입찰사무를 대행하고 계약은 세탁소가 진행
- 입찰 예정가격 등은 협의 후 결정

- 사업 선정을 통보받은 세탁소는 2개월 이내에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의왕시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기간 연장(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세탁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순위가 지원대상자 선정

※ 세탁소와 설치업체의 계약체결이 되었다라도 설치 조건 등이 맞지 않을 경우 예비 후보순위에 따라 세탁기 설치업체가 선정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착공신고 이전에 설치업체는 세탁소에 낙찰 된 VOCs저감 친환경 세탁기의 가격, 용제 회수율, 추가 부대시설 및 비용, 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를 세탁소에 충분히 안내하고 상호 확인 후 하단의 서류를 제출할 것.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전 아래서류를 제출하고, 의왕시 승인에 따라 진행
- 착공신고서 1부. [붙임 서식 2-1]
-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위임장 1부. [붙임 서식 2-2]
- VOCs 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붙임 서식 2-3]
- 용제회수율 시험기관 시험성적서(용제회수율 90% 이상) 1부.
* KS고시(KS B ISO 8232:2007)를 인용한 [별표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성적서 발급(2년 이내)
- 안전관련 인증(KS, ISO, ETL 등)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설치업체) 1부.
- 법인 등기부등본(설치업체)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증명서(설치업체)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VOC저감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서식 1-6]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설치업체) 1부.

○ 시설 설치 및 준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항을 의왕시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친환경 세탁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설치·완료 후 15일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준공신고서 1부. [붙임 서식 3-1]
- 2)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3-2]
 - 2-1) 사업비 산출내역(최종) 1부.
 - 2-2) VOCs 저감시설 설치 전, 설치 중, 설치완료 사진(4×6) 각 1부.
 - 2-3) 통장사본(설치업체) 1부.
 - 2-4)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2-5) 세금계산서(설치업체→세탁소) 1부.
 - 2-6) 자부담입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서류 각 1부.
 - 2-7) 4대보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

12. 보조금 회수

- 의왕시장은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미운영(철거)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사용기간 별 보조금 환수금액>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금} \times [\text{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1. 시설 사용기간은 준공심사 실시 후 합격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저감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보조금 환수의 예외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13. 기타사항

-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 설치·운영
-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보고 및 자료제출, 현장확인, 오염도 측정 등을 의왕시에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에 경기도 및 의왕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자부담)
 - 시설 지원 표지판(명판)을 VOCs 저감시설 정면에 설치 [별표 2호 서식]
- 세탁소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VOCs 저감시설을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의왕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세탁소는 5년간 VOCs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 중단·소유권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전 사전에 의왕시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세탁소는 VOCs 저감시설을 고장 등으로 1개월 이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의왕시와 설치업체에 알려야 함.
- 세탁소는 VOCs 저감시설의 운영(상태)정보 등을 경기도 및 의왕시에서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의 가격, 용제회수율, 추가 부대시설 및 비용, 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를 세탁소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하는 등 기기 고장 시 이용자가 고장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야 함.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 이용자의 고장 신고 또는 기타 이용 문의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설치 후 5년간 제공하여야 함.
- 설치업체는 친환경세탁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하고,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설치업체는 고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3일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VOCs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점검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 수리를 현장 출동 즉시 조치하며, 부품의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함.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 설치 시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지를 남겨야 함.
- 설치업체는 세탁소가 VOCs 저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왕시장은 보조사업 수행 시 의왕시 필요 및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 의왕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 서류 제출 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경기도와 의왕시, 세탁소, 설치업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

14. 문의처

- 사업담당자 : 의왕시 환경과 강민재 주무관(☎031-345-3827)

- 붙임
1. [별표 1] 보조사업자(세탁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2.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1부.
 3. [서식 1-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4.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5. [서식 1-3] 사용자감계 1부.
 6. [서식 1-4] 사업장 위치도 1부.
 7. [서식 1-5]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8. [서식 1-6] 이행확인서 1부.
 9. [서식 1-7]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10. [서식 2-1] 착공신고서 1부.
 11. [서식 2-2] 위임장 1부.
 12. [서식 2-3] VOCs 저감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1부.
 13. [서식 3-1] 준공신고서 1부.
 14. [서식 3-2]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별표 1]



보조사업자(세탁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점	
기존 세탁설비(세탁기) 사용연수	소계	30점	사용연수 확인 (현장확인)
	25년 이상	30	
	20년 이상 25년 미만	25	
	15년 이상 2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5년 미만	5	
공중위생영업소 관리등급	소계	20점	등급인증 증명서류
	녹색등급(최우수업소)	20	
	황색등급(우수업소)	15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업소)	10	
	없음	5	
업체위치	소계	20점	사업장 주소 확인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외)	20	
	준주거지역	15	
	상업지역	10	
민원발생여부	소계	10점	최근 3년 이내 민원 건수
	5회 이상	10	
	3~4회	8	
	1~2회	6	
	없음	4	
세금 납부 증명서	소계	20점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체납 여부 없음	20	
	체납 여부 있음	미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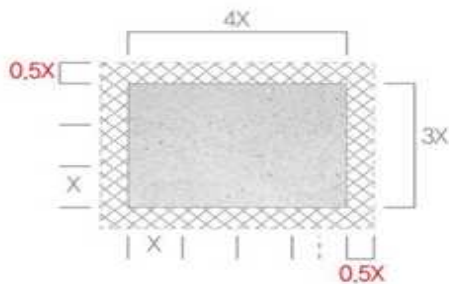
※ 합산 점수가 같을 시 선정기준

- ① 기존 세탁기(또는 건조기)의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

		
사업명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공사기간 : 2025년00월00일 ~ 2025년00월00일		
총사업비 : 00백만 원 (도비 00백만 원, 시·군비 00백만 원, 자부담 00백만 원)		
발주자 : 지원사업장명		
시공사 : 설치업체명 (☎000-000-0000)		

※ 유의사항



※ 시설표지판 부착 시:
시설표지판 시공 시 가능한 한 비례에 맞추어 작업하되
'0.5X' 이상 여유 공간을 둔다.

- VOCs 저감시설 정면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규격, 재질, 글씨 크기 등은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설치한다.
- 글씨를 파내는 음각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쉽게 손상이 되지 않는 재질(SUS 등)로 설치한다.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신청서(세탁업소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 메 일		팩 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 역 분 류	주거지역 등	위생관리등급	녹색 등
보유설비 현황 및 사용연수	드라이클리닝세탁기 (대, kg, 년)		
설치예정내역	친환경세탁기 (1대, kg)		
예 상 사 업 비	총 사업비(원)	보조금 신청액(원)	자부담액(원)
<p>위와 같이 2025년 의왕시 소규모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세탁소 (인감도장)</p>			
<p>의왕시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용 중인 드라이클리닝 세탁기 사용연수 증빙자료 1부. 6. 건축물대장 또는 (해당시) 임대차계약서 각 1부. 7. [서식 1-3]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p>			
<p>[선정 후 추가서류 - 친환경세탁기 설치업체 대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서식 1-4] 사업장 위치도 1부. 9. [서식 1-5]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10. [서식 1-6] 이행확인서 1부. 11. [서식 1-7]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신청자 작성 서식

사용인감계

개인(법인)인감	사 용 인 감	상 호	
(날인)	(날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위의 사용인감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개인사업자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의왕시장 귀하

사업장(세탁소)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약 도> (※ 네이버지도 또는 카카오맵 활용)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세탁기를 미운영(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친환경세탁기 사용기간별 환수금액 >

$$\text{환수금액} = \text{보조금} \times (\text{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1. 친환경세탁기 사용기간은 준공심사 합격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이행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 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도입 후 5년 이내 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의왕시장 귀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본 사업자는 VOCs 저감시설(친환경세탁기) 설치 익년부터 5년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감도장)

의왕시장 귀하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세탁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소재지			
설치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소재지			
VOCs 저감시설 (친환경세탁기)	모델명		용량	kg
	크기(mm) [H×D×L]		용제회수율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2025년 의왕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세탁소	(인감도장)
			세탁업체	(인감도장)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4. 위임장 1부. 5. 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사후관리계획, 보증사항, 소요금액 산출내역 등 포함 6. 용제회수율 시험성적서(용제회수율 90% 이상) 1부. 7. 안전관련 인증(KS, ISO, ETL 등) 증빙서류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설치업체) 1부. 9. 법인 등기부등본(설치업체)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0. 법인 인감증명서(설치업체)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1. 이행확인서(설치업체) 1부. 12.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설치업체) 1부.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VOCs 저감시설 설치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세탁소)	사 업 장 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친환경세탁기	모델명 : 용량 :
		용제회수율 :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입자에게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수입자, 위임자) 각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의왕시장 귀하

VOCs 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 업체현황

가. 대상업체

업 체 명	사업장면적 (m ²)
소 재 지	

나. 현장사진(시설 지원 전) - 외부전경, 내부전경, 세탁기, 건조기, 배출구 등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2. 설치내역

가. 설치업체 현황

나. 시설현황 - 모델명, 사양, 현황, 크기, 성능, 안전기능, 보증사항(기간) 등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Cs 저감 성능 - 제품제원(크기 및 용량 등), 회수원리, 안정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용제회수성능 등 기술 • VOCs 저감시설 이용의 편리성 - 조작 및 사용법,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현황 • VOCs 저감시설 안전기능 우수성 - 안전장치 적정성 및 안전사고 예방 기능 등 기술, 안전기능 관련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 등록현황
--

3. 추진계획(일정)

—
—
—

4. 총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가능

5. 사후관리계획

1) 세탁소

2) 설치업체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사항 등 포함)

<참고>

- 운영관리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 업무분장 내용 제시(A/S 인력 등)
- VOCs 저감시설 관련 세탁소 교육계획 및 방안
 - 제품 사용 및 안전 교육의 횟수 등
- 고객 A/S 지원 및 사전·후 관리
 - VOCs 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 관련 구체적 관리방안
 - 고장 시 3일 이내 수리, 고장 부품에 대한 예비품 보유, 자재수급 기간과 주요 부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 방안 등
- 향후 VOCs 저감시설 사후관리 이행 방안 구체적 기술

6. 기타

※ 위 사항 외 시·군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가능 / 모든사항은 상세히 기재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 업 명		「2025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신청인	세탁소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설치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시설 설치 내역	시설명	모델명	규격 (H×D×L, mm)	처리용량 (kg)	용제회수율 (%)	수량
	친환경 세탁기					1
설치기간		2025. . . ~ 2025. . . (소요기간 : 개월 일)				
신청 내용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총 보조금		선금지급액		보조금 신청액	
<p>위와 같이 2025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설치업체 (인감도장)</p>						
<p>의왕시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 산출내역(최종) 1부. 2. VOCs 저감시설 설치 전, 설치 중, 설치완료 사진 각 1부. 3. 통장사본(설치업체) 1부. 4.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설치업체⇒세탁소, 총 설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 입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서류 각 1부. 7. 4대보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